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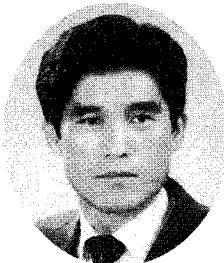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하여(Ⅱ)

# POPs 협약 채택 위한 국가 조문별 입장차이

올해 3월까지 협상 4번 열려, 국제사회 관심 반영

목표는 생산·배출 금지, 국내도 POPs 물질 규제·감소 노력 지속

## POPs 물질에 대한 국내 및 국제동향



이 병묵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자원과장

12개 POPs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사용을 금지 또는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진국 및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2개 물질중에 농약으로 쓰이는 9개물질은 모두 등록이 취소 때는 미등록 상태이나 산업부산물인 Furans, Dioxins은 배출저감 대상물질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잔류성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감소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염실태조사를 근거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 환경오염실태조사 10년 계획(1979)”에 의해 1989년까지 2천여종, 그 이후 1천 1백여종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사용중인 잔류성 화학물질을 잠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WHO 및 UNEP와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IFCS**(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협의체) UNEP, ILO, WHO 등 UN 관련 또는 비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유해성 평가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지역간 협력 및 규정 개발에 관련된 기구이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의 유해성 평가 및 감소를 위한 'Lifecycle'을 통한 접근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 감소를 위해 시험, 평가, 타기관과의 협력 체 모색 등을 통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화학물질 프로그램이다.

**IPCS**(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 식품 잔류 허용기준 설정 및 유해성 등 주로 화학물질에 관한 data의 평가, 분석 및 정보제공을 한다.

**UNEP**(United Nation Environmental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구 IRPTC로 POPs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생산, 사용, 배출, 생물체에 대한 영향 및 폐기에 관한 data profile을 작성하며 IPCS 및 FA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절차 협약화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다. 협약이 발효되면 각국은 자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 규제되는 화학물질 및 유해성이 높은 농약 제품의 사용상황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이 PIC 절차 대상물질로 지정되면 그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입승인 여부 및 수입국 지정 요건에 따라 수출할 의무, 당사국 상호간 화학물질 안전관리상 필요한 정보의 교환, 개도국의 협약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PIC 절차에 따르고 있는 물질은 농약 24종을 비롯, 모두 29종의 화학물질로서 우리나라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몇몇 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 생산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PIC 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 POPs 규제협약의 필요성

POPs 물질이 생산 및 배출되지 않는 지역 까지 철새의 이동이나 대기이동을 통해서도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증거와 오랜기간동안 인축 및 자연 생태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범지구적 환경에 대해 위협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 일부 이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POPs 물질로부터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일부 선진국가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를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POPs 국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POPs 국제 규제 협약은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가내 지역간에도 인간 및 환경에 대

지속적으로 큰 위해성을 지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 이들 물질의 배출저감 및 감축에서 최종적으로는 생산·배출 금지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POPs 협약체택을 위한 정부간 협상 동향

POPs 규제협약은 98년 제1차 정부간 협상 회의가 개최된 이후 올해 3월까지 4차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국내 환경부, 농촌진흥청, 국립환경연구원,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참석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POPs 협상 진행상황 파악 및 국내 농약산업 보호를 위해 농약분야의 전문가가 참석,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제1차 회의 - 캐나다 몬트리올(98. 6)

95개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기 해류 등을 통하여 장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POPs의 특성상 전 세계적인 동시규제가 필요하고 2000년까지 이들의 배출을 규제할 협약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협상회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회의일정, 의사규칙 및 협상회의 부속기구로서 추가물질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그룹(CEC) 구성 등 주로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약 제정체계와 기술지원에 관한 조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협약이행측면에 관한 그룹(IG)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중에서 EU는 현재 12종의 POPs 외에 UN/ECE의 POPs의 정서에 포함된

Chlordecone, PAHs, Hexabromobiphenyl, HCH 4종의 물질 추가, 리우선언의 15번째 원칙인 예방원칙 및 POPs의 완전 근절을 주장하였다. 반면 JUSSCANNZ 국가(OECD 회원국중 15개 EU 회원국 제외)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엄격한 선정기준을 둘 것과 완전 근절보다는 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재정기금의 설립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DDT 사용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으며 일부는 POPs를 수출한 선진국들의 책임과 보상문제를 강조하였다.

#### 제2차 회의 - 캐나다 나이로비(99. 1)

100여개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 협상회의에서는 그간 제시된 각국의 입장과 여타 환경 협약을 참조,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 내용중 의도적으로 쓰이는 물질의 생산·사용금지 또는 제한, 부산물 배출저감, 정보교환 등의 핵심조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EU와 JUSSCANNZ간의 입장차이로 조문합의에는 실패하였다. 다만, 차기 회의부터 법률초안작성그룹(LDG)을 구성하기로 하여 실제 협약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도이다.

핵심조항인 POPs 생산·사용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입 규제도 여기에 포함할 것과,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에 따른 규제 일정 차별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JUSSCANNZ 국가들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수출입 문제는 바젤협약 등 기존 협약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하여(Ⅱ)

는 이들과의 중복을 들어 반대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구분에 따른 규제일정 차별화 보다는 국가별 실정에 따른 규제를 주장하였다. 한편 EU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한 경우에만 수출입을 허용할 것과 환경단체 및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배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제3차 회의 - 스위스 제네바( 99. 9)

115개국 정부와 15개 이상의 국제기구 또는 정부간기구, 80여개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주로 의도적으로 생산·사용된 10개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 부산물 배출저감, 협약 적용배제, 추가물질 선정기준, 기술·재정지원 등과 관련 소그룹 회의를 전체회의와 동시에 진행하여 의견충돌을 시도하였다. 또한 분쟁해결, 협약개정 및 발효 등 국제협약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문들과 1차 논의를 마친 조문들을 법률초안작성그룹에 의뢰, 문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협약조문 전체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고, 특히 기술·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대립으로 협약 초안도 작성하지 못하여 인도, 중국 등 많은 개도국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조문별 각국의 입장을 보면, 기술·재정지원 등 협약이행 측면에 관한 부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JUSSCANNZ와 EU 국가들간 의견대립이 심하였다.

POPs의 생산·사용금지 또는 제한, 부산물 배출저감과 관련하여 EU는 협약의무 강화를 JUSSCANNZ 그룹은 각국 현실을 감안한

조치를, 다수의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에 따른 규제일정 차별화와 기술·재정지원 여하에 따른 의무이행을 주장하였다.

추가물질 선정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안을 협상의 기초로 하기로 하고 잔류성과 생물축적성 등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일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협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인 추가물질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EU는 쉽고 용이한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물질들을 앞으로 포함할 의도를 보인 반면, JUSSCANNZ 그룹은 선정범위를 축소하고 엄격한 절차를 주장하였다.

기술·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모임인 G77과 선진국들간의 대립이 심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협약이행을 위한 별도의 재정체계 수립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지구환경금융(GEF)과 같은 기존 재정체계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 제4차 회의 - 독일 본(2000. 3)

가장 많은 121개국 정부와 8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참가, POPs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으로 기술·재정지원에 관한 조문 초안이 작성되었고 기술지원의 경우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경우 독립된 신규 기금 설립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대립이 계속되었으며, 협상회의 의장 제안으로 금년 6월이전에 20명 이내로 소그룹을 구성, 논의후 그 결과를 차기 협상 회의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농악정보**